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승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 의 자 : 조승환·김승수·김은혜
이성권·이종욱·권영진
김재섭·김미애·곽규택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「관세법」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,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.

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).

법률 제 호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”을 “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 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) ① 제 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(이하 “판매자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교통·에너지·환 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.	제11조(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 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</u>	1. 「 <u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업법</u> 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<u>가짜석유제품</u> ----- -----
가. 「 <u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</u> 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<u>가짜석유제품</u>	<삭 제>
나. 「 <u>부가가치세법</u> 」 제32조 에 따른 <u>세금계산서</u> 나 「 <u>소득세법</u> 」 제163조 또 는 「 <u>법인세법</u> 」 제121조 에 따른 <u>계산서</u> 를 발급받 지 <u>아니하고</u> 공급(「 <u>부가 가치세법</u> 」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 다)받은 <u>과세물품</u>	<삭 제>

2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